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	--

제안연월일 : 2025. 8.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다음 3건의 법률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건명	의안번호	발의자	발의일	전체회의 상정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3869	김선민의원	2024.9.10.	2024.11.14.
	8347	김문수의원	2025.2.21.	2025.8.18.
	10818	서영석의원	2025.6.13.	2025.8.18.

나.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5.8.19.)에서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라.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25.8.27.)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조산사 임무에 관한 규정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양성과정 또한 다양하지 못하여 조산사 양성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현행법 제43조제1항은 병원, 치과병원, 종합병원에는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면서도, 정신병원에는 이를 허용하지 않아 정신병원 환자의 의료 선택권과 접근성을 제약하고, 병원 간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2025년 1월 23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음.

아울러 최근 일부 병원에서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수술행위를 교사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언론 등을 통하여 확인된 바, 이러한 행위는 의료계 전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계기가 될 수 있음. 특히, 수술실은 환자의 의식이 없고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되어 의사-환자 간 정보 비대칭이 극대화되는 공간이므로, 수술실 내 불법 의료행위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내부 감시와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음.

따라서, 조산 인력 양성을 위해 조산사의 임무와 조산사 면허시험 응시자격을 확대하여 규정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해 정신병원에서도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사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함과 동시에 공익신고자에 대한 형사처벌 감경·면제의 법적근거를 마련

하여 수술실 내 불법 의료행위를 보다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수술실 내 환자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제4호, 제6조제3호 신설, 제43조제1항, 제87조의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조산사는 조산(助産), 임신부·태아·신생아에 대한 산전·산후관리, 보건 교육·상담 및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제6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8조제1항에 따른 조산사회에서 실시하는 조산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의료기관에서 수습과정을 마친 자

제43조제1항 중 “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을 “치과병원·정신병원 또는 종합병원”으로 한다.

제87조의2제1항 중 “제12조제3항을 위반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2조제3항을 위반한 죄
 2. 제27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죄
- ③ 제27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자가 그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호의 공익신고를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의 감경 또는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호의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의료인) ① (생략) ②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 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1. ~ 3. (생략) 4. <u>조산사는 조산(助産)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u> 5. (생략)	제2조(의료인)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u>조산사는 조산(助産), 임산부·태아·신생아에 대한 산전·산후관리, 보건 교육·상담 및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u> 5. (현행과 같음)
제6조(조산사 면허) 조산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조산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2. (생략) <u><신설></u>	제6조(조산사 면허) ----- ----- ----- ----- ----- -----. 1. 2. (현행과 같음) 3. <u>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8조제1항에 따른 조산사회에서 실시하는 조산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의료기관에서 수</u>

제43조(진료과목 등) ① 병원·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은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제87조의2(벌칙) ① 제12조제3항을 위반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신설>

② (생략)

<신설>

습과정을 마친 자

제43조(진료과목 등) ① -----치과병원·정신병원 또는 종합병원은-----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87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1. 제12조제3항을 위반한 죄

2. 제27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죄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7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자가 그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호의 공익신고를 한

<u>경우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제1항 또는 제2 항에 따른 형을 감경하거나 면 제한다.</u>
